

1. 개정이유

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생태통로 설치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, 생태통로 기능 제고를 위해 설치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명확화(안 제28조제1항)

- 동물찾길사고 다발지역 또는 야생동물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어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지역으로 명시

나. 생태통로 조사방법 실효성 제고(안 28조의2)

- 무인센서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개선

다. 생태통로 기능제고를 위해 설치기준 의미 명확화(안 별표 2 제3호)

- 현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전

3) 규제심사 전

환경부령 제 호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5조제1항”을 “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”를 “발생하거나,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어 생태통로”로, “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”을 “환경부장관이 인정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5조제1항”을 “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제28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생태통로 조성 후 3년 동안: 계절별 1개월 이상 무인센서카메라,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등 감시장비(이하 “감시장비”라 한다)를 작동시켜 조사

제28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”를 “연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”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

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5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3제4항제7호 중 “환경보전협회”를 “한국환경보전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중 “전통 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로 한다.

별표 2 제3호 전단 중 “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에”를 “설치하고, 동물의 진출입과 이동에”로, “상부”를 “최대한 완만한 경사면을 조성하며, 상부에 적정한 밀도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(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)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	제28조(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)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	7. ----- 발생하거나,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어 생태통로----- 환경부장관이 인정한-----
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	②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-- ----- --.
제28조의2(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)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단서 신설>	제28조의2(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. 다만,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.
1. 생태통로 조성 후 3년 동안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	1. 생태통로 조성 후 3년 동안: 계절별 1개월 이상 무인센서

<u>당하는 방법으로 조사</u>	<u>카메라, 폐쇄회로텔레비전(CC TV) 등 감시장비(이하 “감시 장비”라 한다)를 작동시켜 조</u> <u>사</u>
<u>가. 현장 직접조사: 계절별 1</u> <u>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</u> <u>하여 조사</u>	<u><삭 제></u>
<u>나. 무인센서카메라, 폐쇄회</u> <u>로텔레비전(CCTV) 등 감</u> <u>시장비(이하 “감시장비”라</u> <u>한다)를 이용한 조사: 계절</u> <u>별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</u> <u>작동시켜 조사</u>	<u><삭 제></u>
2.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: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조사	2. ----- 연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 시켜 -----
<u>가. 현장 직접조사: 연 1회 이</u> <u>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</u> <u>조사</u>	<u><삭 제></u>
<u>나.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:</u> <u>연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</u> <u>작동시켜 조사</u>	<u><삭 제></u>
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 제28조의3(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의 승인·변경승인 절차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 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환 경부장관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 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 다. 1. ~ 6. (생 략) 7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9조 에 따른 <u>환경보전협회</u> 8. (생 략) ⑤·⑥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 제28조의3(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의 승인·변경승인 절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----- <u>한국환경보전원</u> 8. (현행과 같음) ⑤·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